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승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03 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 백승아·김남근·김준혁

박은정 • 박해철 • 박홍배

오세희 • 이광희 • 임미애
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확대하고,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,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장애를 가진 자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, 가족돌봄휴 가는 유급으로 하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을 지 원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항, 제19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 등)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(이하 "육아휴직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 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2.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3. 근로자가 장애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·정 신적 장애를 말한다)가 있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"자녀"를 "자녀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·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한다)"로 한다.

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자녀"를 "자녀(「장애인복지법」

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·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녀의 경우에는 16 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한다)"로 한다.

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"노령"을 "노령, 장애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·정신적 장애를 말한다)"로, "허용하여야 한다"를 "허용하여야 하며,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"로 한다. 같은 조 제4항제2호 본문 중 "10일[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모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) 이내]"을 "10일[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·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와 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) 이내]"로 한다.

제39조제3항제8호 중 "허용하지 아니한 경우"를 "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가족돌봄휴가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② 제22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족돌 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임 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(이하 "육아휴직"이 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근 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(이 하 "육아휴직"이라 한다)을 신 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 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
- 1.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
- 2.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3. 근로자가 장애(「장애인복지 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 적・정신적 장애를 말한다)가 있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 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생 략)

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<u>자녀</u>를 양육하기 위하여근로시간의 단축(이하 "육아기근로시간 단축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한다. 다만,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, 정상적인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~ ⑦ (생 략)

제19조의5(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) ① 사업주는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<u>자녀</u>를 양육하는 근로 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①
자녀(「장애인복지법」 제
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
적 장애를 가진 자녀의 경우에
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
<u>학년 이하로 한다)</u>
·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5(육아지원을 위한 그
밖의 조치) ①
워의 소시) (D
/ . [
<u>자녀(</u>
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・정
신적 장애를 가진 자녀의 경우
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
<u>1학년 이하로 한다)</u>

1. ~ 4. (생 략) ② (생 략)

제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) ① (생 략)

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(조 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 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 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(이하 "가족돌봄휴가"라 한다) 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 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청 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 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
등을 위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
<u>♦</u>
②
i 과 기시
<u>노령, 장애</u>
(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
<u>에 따른 신체적·정신적 장애</u>
<u>를 말한다)</u>
허용하여야 하
며,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기간
며,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기간

- ③ (생략)
-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(생략)
- 2.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[제3호에 따라 가족 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) 이내]로 하며,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. 다만,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지 기간에 포함된다.

3. (생략)

⑤ ~ ⑩ (생 략)

제39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

③ (현행과 같음)
4
1. (현행과 같음)
2
<u>10일[「장애인복지법」</u>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·
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녀를
돌보기 위한 경우와 제3호에
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
장되는 경우 20일(「한부모가
<u> </u>
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이) 이네!
<u>경우 25일) 이내]</u>
·
3. (현행과 같음)
⑤ ~ ⑩ (현행과 같음)
제39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

같음)

(3)

-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7. (생략)
- 8. 제22조의2제2항(같은 조 제4 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 된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 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<u>허용하</u> 지 아니한 경우
- 9. (생략)
- ④·⑤ (생 략)

1. ~ 7. (현행과 같음)
8
8
허용하지
<u>0 & 0 \\ </u>
<u>아니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아</u>
니한 경우
O (원체과 가 O)
9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